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개방형직위및공모직위의운영
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재 고위공무원단, 과장급 및 담당급 직위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공모 직위 대상을 6급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직위까지 확대하고, 과장급 및 담당급 직위와 같이 능력 있는 바로 하위 직급 공무원이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일반 승진요건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못하여도 지원 가능하도록 하여 능력 있는 공무원이 역량을 펼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능력과 직무 중심의 공직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하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개선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을 연기·변경하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8조를 준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실무급(6급) 공모 직위 속진임용제 도입 (안 제13조 등)

1) 현재 고위공무원단·과장급 및 담당급(무보직 4급·5급) 직위에 한정

하여 운영하던 공모 직위를 6급(이하 “실무급”)까지 확대하고, 실무급 공모 직위를 대상으로도 인사교류를 허용하며, 공모 직위를 최초 지정할 경우 해당 직급에 결원이 있고 직위에 결원 발생시 지체없이 임용하고 인사교류 등의 경우 충원시기 조정을 허용하고자 함.

(안 제13조제4항 신설, 제14조제2항)

- 2) 실무급 직위의 경우에도 과장급·담당급 직위와 같이 역량 있는 바로 하위 직급 공무원이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하여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역량 있는 공무원의 상위 직급 임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안 제15조제2항)

- 3) 실무급 직위 선발을 위한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심사위원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심사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인사혁신처장이 추천 및 외부위원 중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는 등 공모 직위 선발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16조제1항, 제21조제4항)

- 4) 임용제한기간 만료 후 보직관리 조항의 적용범위에 기존 고위공무원단·과장급 및 담당급 직위 뿐만 아니라 실무급 직위도 포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담당급 및 실무급 직위 타 부처 출신 임용자의 경우에도 원 부처 복귀시 초과현원을 인정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나. 개방형 직위 운영 활성화 (안 제27조제1항)

- 1) 필요한 경우 실시하던 개방형·공모 직위 운영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개선하여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안 제27조제1항)

다. 기타 조문 정비 (안 제3조 등)

- 1)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사항('24.12.31.)을 반영해 동법 제28조의4제 1항 후단(각 부처 실·국장급 직위 중 임기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간주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 삭제 (안 제3조제5항 삭제)
-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을 연기·변경하는 경우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48조를 준용하는 근거 마련 (안 제21조제2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5. 11. ~ 6. 10.)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소속 장관은 담당급직위, 과장급직위 또는 소속 기관의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6급 경력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이하 “실무급직위”라 한다)를 공모 직위로 지정 하되,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장급직위 또는 담당급직위”를 “제13조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과장급직위, 담당급직위 또는 실무급직위”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제13조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으로, “과장급직위 또는 담당급직위”를 “과장급직

위, 담당급직위 또는 실무급직위”로 한다.

제16조제1항 단서 중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제13조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제13조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단서 삭제>

제21조제2항 후단 중 “준용한다”를 “준용하고, 시험의 연기·변경에 관하여는 같은 규정 제48조를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제13조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을 “정기적으로”로, “그 결과”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5항, 제21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① ~ ④ (생략) ⑤ <u>법 제28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란 각종 위원회의 상임위원 등 법령에 따라 임용자격요건과 임기가 정해진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를 말한다.</u> ⑥ (생략) 제13조(공모 직위의 지정) ① ~ ③ (생략) <u><신설></u>	제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u><삭제></u>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공모 직위의 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소속 장관은 담당급직위, 과장급직위 또는 소속 기관의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6급 경력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이하 “실무급 직위”라 한다)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되,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해</u>

④ · ⑤ (생략)

제14조(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

① (생략)

② 소속 장관은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장급직위 또는 담당급직위 중 특정 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28조의5 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공모 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임용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15조(공모 직위 선발시험) ①
(생략)

② 소속 장관은 제13조제2항 또

야 한다.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14조(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3조제2항, 제3
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과장급직
위, 담당급직위 또는 실무급직
위 -----

[illegible]

③・④ (현행과 같음)

제15조(공모 직위 선발시험)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3조제2항, 제3

는 제3항에 따라 공모 직위로 지정된 과장급직위 또는 담당급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③ ~ ⑥ (생략)

제16조(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① 소속 장관은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이루어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선발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19조(공모 직위 임용자의 보직 관리 등) ① (생략)

② 소속 장관은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항 또는 제4항-----

----- 과장급직위, 담당급직위

또는 실무급직위-----

-----.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① -----

----- 제13조제2항, 제3

항 또는 제4항-----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공모 직위 임용자의 보직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3조제2항, 제3

항 또는 제4항-----

그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용(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임용
당시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원 소속 장
관이 임용하는 경우를 포함하
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
원 소속 장관은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
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여야 한
다. 다만,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
다.

제21조(시험의 공고) ① (생략)

② 개방형 직위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임
용기간 만료 예정일 2개월 전까
지 시험 실시에 관하여 응시자
가 알아야 할 사항을 인터넷 홈
페이지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에는 일간신문, 관보 또는 방송

-----.

③ -----

--. <단서 삭제>

제21조(시험의 공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내용 및 변경공고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 시험령」 제47조를 준용한다.

③ (생략)

④ 소속 장관은 공모 직위에 대하여 직위 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의 결원이 예상되는 날의 2개월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기관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대해서는 소속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 3. (생략)

⑤ ~ ⑦ (생략)

제27조(운영실태의 평가 등) ①인사혁신처장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을 지도·지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실태를 조사·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준용하고, 시험의 연기·변
경에 관하여는 같은 규정 제48
조를 준용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13조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

-----.

1. ~ 3.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7조(운영실태의 평가 등) ①--

--- 정기적으로 -----

--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과--

② (생략)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	
연 락 처	(044) 201 - 8351